법제처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31.(일) 12:00	배포 일시	2022. 7. 31.(일) 12: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이기정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진성훈 (044-200-6515)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 8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함(「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8. 4. 시행).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둠.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항만안전특별법」 제정, 8. 4. 시행).

○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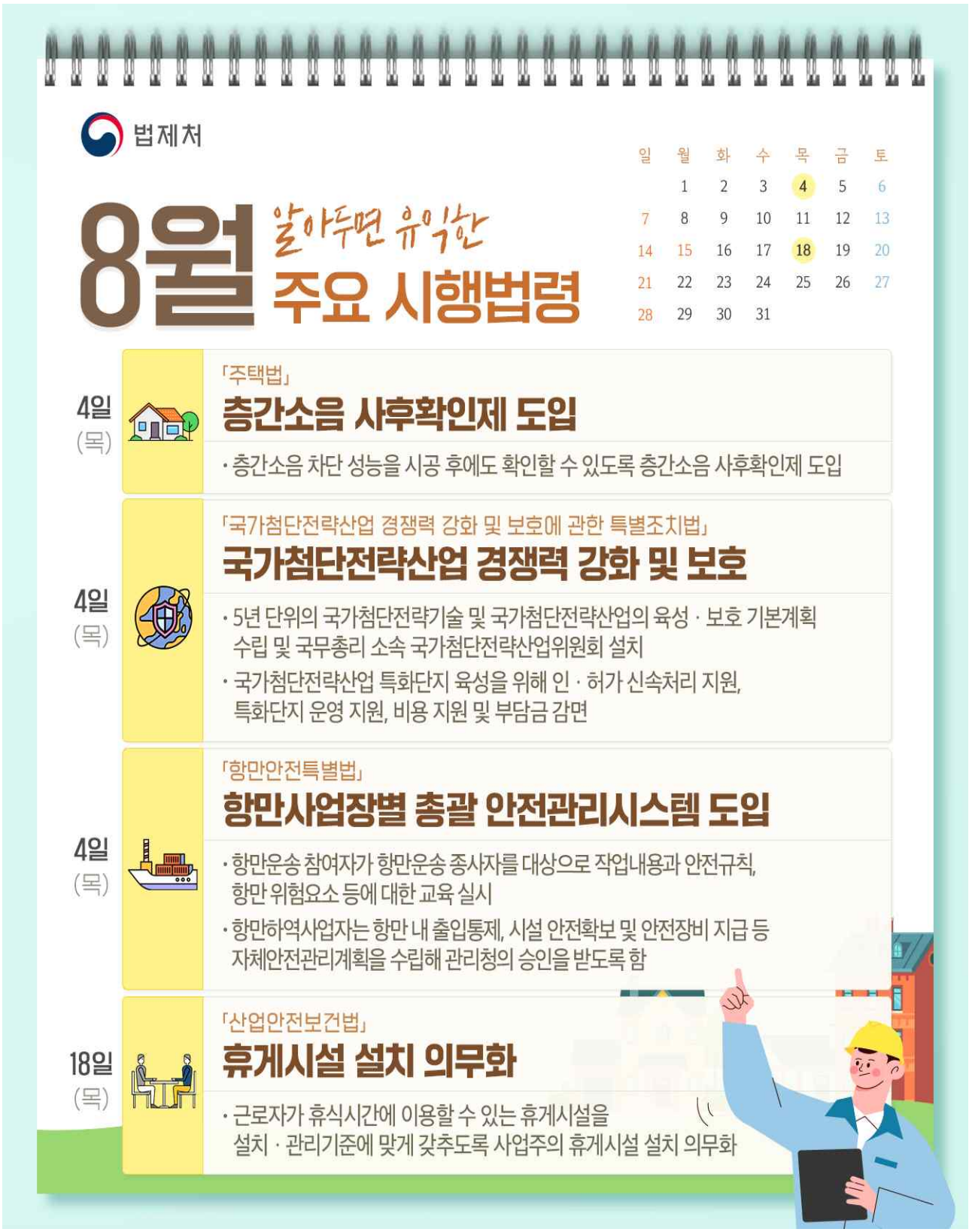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개정, 8. 18.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

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2년 8월 시행법령 목록(2022. 7. 30.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법」(8월 4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8월 4일 시행)

【제정이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

○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제11조).

○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를 규정함(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항만안전특별법」(8월 4일 시행)

【제정이유】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8조).

○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제1항).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지정·위촉하도록 함(제9조제5항 및 제6항).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8월 18일 시행)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3조제1항·제2항, 제175조제6항제6호·제6호의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28조의2, 제175조제3항제2호의3 및 제1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22년 8월 시행법령 목록 (2022. 7.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7호	기획재정부	8. 1.
2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3호	보건복지부	8. 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3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8. 1.
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2413호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8. 1.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28호	기획재정부	8. 1.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25호	법무부	8. 1.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24호	법무부	8. 1.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34호	국토교통부	8. 1.
9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8822호	국토교통부	8. 4.
1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국토교통부	8. 4.
11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824호	국토교통부	8. 4.
12	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국토교통부	8. 4.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5호	기획재정부	8. 4.
14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국토교통부	8. 4.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28호	국토교통부	8. 4.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12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8. 4.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813호	산업통상자원부	8. 4.
1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00호	국방부	8. 4.
19	국토기본법	법률	제18829호	국토교통부	8. 4.
20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8801호	국방부	8. 4.
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02호	국방부	8. 4.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9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4.
23	발명진흥법	법률	제18816호	특허청	8. 4.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831호	국토교통부	8. 4.
25	상표법	법률	제18817호	특허청	8. 4.
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8819호	산업통상자원부	8. 4.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8821호	보건복지부	8. 4.
2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33호	국토교통부	8. 4.
29	주택법	법률	제18834호	국토교통부	8. 4.
30	항만안전특별법	법률	제18369호	해양수산부	8. 4.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09호	국토교통부	8. 4.
32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국토교통부	8. 4.
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6호	국토교통부	8. 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8호	국토교통부	8. 4.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07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8. 4.
3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30호	국토교통부	8. 9.
3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628호	행정안전부	8. 10.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국토교통부	8. 11.
39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378호	문화체육관광부	8. 11.
40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760호	문화체육관광부	8. 11.
41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8808호	문화체육관광부	8. 11.
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9호	국토교통부	8. 11.
43	사립학교법	법률	제18372호	교육부	8. 11.
44	체육인 복지법	법률	제18381호	문화체육관광부	8. 11.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60호	국토교통부	8. 11.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2호	환경부	8. 11.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국토교통부	8. 11.
48	공직선거법	법률	제1883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17.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 18.
50	농지법	법률	제18401호	농림축산식품부	8. 18.
5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고용노동부	8. 18.
52	지역보건법	법률	제18418호	보건복지부	8. 18.
53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8397호	법무부	8. 18.
5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1호	환경부	8. 18.
5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6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 18.
56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5호	농림축산식품부	8. 18.
5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46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 18.
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 18.
59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농림축산식품부	8. 18.
6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	특허청	8. 19.